학과평가 및 정원조정 운영세칙

(제정 2018. 12. 1.)
(제명변경 2022. 9. 1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「학사단위구조개편 및 정원관리 규정」 제8조에 따라 학사단위구조개편을 위한 학과평가 및 정원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9.1.>

제2조(적용) ① 이 세칙은 학부 학사단위(이하 “학과”라 한다)의 평가 및 정원조정에 적용한다. <개정 2022.9.1.>

② 대학원 학사단위의 평가 및 정원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사단위구조개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장 학과평가

제3조(평가 기준) ① 학과의 정원조정을 위한 평가지표 및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2.9.1.>

영 역	평 가 지 표	주 요 내 용	반영비율(%)	
신입생	신입생충원율	모집정원 대비 등록자 비율	60	60
	모집경쟁률	모집정원 대비 총 지원자 비율	30	
	모집잔여율	모집정원 대비 총 잔여인원 비율	10	
재학생	재학생충원율	편제정원 대비 재학생 비율	60	30
	중도탈락률	재적생 대비 중도탈락자 비율	40	
졸업생	졸업생취업률	졸업생 취업대상자 대비 취업자 비율	100	10

② 신입생 지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입생 지표는 정원내 정시모집까지의 결과를 이용한다. 다만, 추가모집을 포함하지 아니하며, 일반학생 전형으로 한정한다.
2. 신입생충원율은 100%까지만 인정하며, 정시모집에서 미충원이 발생했으나 잔여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인원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충원한 것으로 인정한다.
3. 모집잔여율은 최종등록 후 총 잔여인원으로 계산한다. 다만,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하여는 1단계 불합격자의 50%를 잔여인원으로 추가 인정하여 계산한다.
4. 신입생충원율은 (충원율%-50%)×2로 계산하며, 모집경쟁률과 모집잔여율은 T점수로 계산한다.

③ 재학생 지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학생충원율은 해당 학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100%까지 인정하되 재학생수에는 정원외 학생을 포함한다. 다만, 해당 학년도에 전과를 한 학생의 경우 전과 전후 학과의 모수 및 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22.9.1.>
2. 중도탈락률은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.
3. 재학생 지표는 T점수로 계산한다.

④ 졸업생 지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졸업생 지표는 정부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를 사용한다.

2. 삭 제 <2022.9.1.>

3.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생 지표에서 제외(즉, 분자와 분모에서 모두 제외)한다.

4. 졸업생 지표는 T점수로 계산한다.

⑤ 삭 제 <2022.9.1.>

제4조(평가기간 등) ① 평가기간은 최근 2년으로 하되, 각각 해당 학년도의 평가지표 및 반영비율을 적용한다. <개정 2022.9.1.>

② 학년도별 가중치는 최근 학년도를 60%, 이전 학년도를 40%로 한다. <개정 2022.9.1.>

③ 삭 제 <2022.9.1.>

제5조(평가유예) ① 신설 학과는 신설 학년도로부터 2년 차까지는 평가를 유예하며, 3년 차부터 5년 차까지의 재학생충원율 및 졸업생 지표는 평가대상 전체 학과의 평균값을 적용한다. <개정 2022.9.1.>

② 학과를 통합하거나 신설에 상당하는 수준에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학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설학과로 간주할 수 있다. <개정 2022.9.1.>

③ 삭 제 <2022.9.1.>

제6조(관리정원) ① 관리정원이란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사단위구조개편 주관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입학정원을 말한다. 다만, 관리정원은 사용되기 전까지는 해당 학과의 입학정원으로 간주한다. <개정 2022.9.1.>

② 관리정원은 (이전 학년도 이월 인원 + 해당 학년도 신규 지정 인원 - 해당 학년도 해제 인원 - 해당 학년도 사용 인원)으로 산정하며, 매 학년도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순서에 따라 해당 학년도의 학과별 관리정원을 신규 지정, 해제, 사용 및 이월한다. <신설 2022.9.1.>

③ 관리정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 및 해제한다. 다만, 계산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
1. 신입생 정원내 정시모집까지의 등록 결과 미충원 인원이 있는 학과에 대하여 미충원된 인원의 50%를 관리정원으로 지정한다. 다만, 정원내 정시모집에서 잔여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인원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충원한 것으로 간주한다. <개정 2022.9.1.>

2. 학과평가 결과 하위 10% 이내에 속하는 학과에 대하여 입학정원의 10%를 관리정원으로 지정한다. 다만, 관리정원이 있는 학과에 대하여는 입학정원에서 관리정원을 제외하고 계산한다. <개정 2022.9.1.>

3.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학과에 대하여는 둘 중 큰 수까지 제1호와 제2호의 순서로 관리정원을 지정한다. <개정 2022.9.1.>

④ 관리정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제한다. <신설 2022.9.1.>

1. 관리정원이 있는 학과가 학과평가에서 상위 70% 이내에 속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관리정원을 모두 해제한다. <개정 2022.9.1.>

2. 미충원에 따른 관리정원이 있는 학과가 최근 2년 연속 100% 충원한 경우 미충원에 따른 관리정원을 모두 해제한다. 이 경우 잔여 인원에 관한 사항은 제3항제1호의 단서를 준용한다. <개정 2022.9.1.>

가. 삭 제 <2022.9.1.>

나. 삭 제 <2022.9.1.>

다. 삭 제 <2022.9.1.>

⑤ 관리정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.

1. 관리정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증원 및 신설학과의 입학정원 배정 등에 사용한다. <개정 2022.9.1.>

2. 관리정원은 미충원에 따라 지정된 관리정원, 지정 연도가 오래된 관리정원, 학과평가에 따라 지정된 관리정원의 순서로 사용한다 <개정 2022.9.1.>

가. 삭 제 <2022.9.1.>

나. 삭 제 <2022.9.1.>

다. 삭 제 <2022.9.1.>

3.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, 위원회는 증원 또는 감원 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범계열, 보건계열, 미래융합대학 등의 학과에 대하여는 관리정원의 사용을 유예하거나 계열 또는 대학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9.1.>

⑥ 해당 학년도의 정원조정을 마친 후에 남아 있는 관리정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다음 학년도로 이월한다. <개정 2022.9.1.>

1. 다음 학년도로 이월하는 관리정원의 총합은 해당 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의 3%까지로 한다. <개정 2022.9.1.>

2. 대학 입학정원의 3%를 초과하는 관리정원은 지정연도가 오래된 관리정원, 학과평가 상위학과의 관리정원, 미충원에 따라 지정된 관리정원의 순서로 해제한 후 다음 학년도로 이월한다. <개정 2022.9.1.>

3. 삭 제 <2022.9.1.>

4. 삭 제 <2022.9.1.>

5. 삭 제 <2022.9.1.>

제3장 정원조정

제7조(안건심의) 위원회는 학과별 입학정원의 증원 및 감원(이하 “정원조정”이라 한다)에 앞서 학과별 입학정원의 변화를 수반하는 학과 신설, 통합 및 폐지 등 구조개편에 관한 안건을 우선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22.9.1.>

[조명변경 2022.9.1.]

제8조(정원조정) ① 정원조정을 희망하는 학과는 소속 전임교원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에 학장을 거쳐 기획처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9.1.>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학과별 정원조정을 심의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 <개정 2022.9.1.>

1. 증원 및 감원 대상 학과는 학과평가 결과 각각 상위 40% 및 하위 40% 이내에 속하는 학과를 원칙으로 한다. <신설 2022.9.1.>

2. 증원 및 감원 인원은 해당학과 입학정원의 20%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 <신설 2022.9.1.>

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전체 입학정원의 감원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학과 및 신설·통합·분리 등 구조개편 학과의 정원을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2.9.1.>

④ 기획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해당 학년도의 추가 증원 또는 감원 필요 인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9.1.>

⑤ 제4항에서 감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관리정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정원을 조정하며, 관리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감원 목표 인원수에 도달할 때까지 해당 학년도 학과평가 결과 하위 학과로

부터 입학정원의 10%보다 크거나 같은 첫 번째 5의 배수로 감원한다. 이 경우, 해당 학년도에 제6조에 따라 관리정원으로 지정된 인원수는 감원 인원수로 인정한다. <개정 2022.9.1.>

⑥ 제4항에서 증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학과별 경쟁력 및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하여 증원 대상 학과 및 학과별 증원 인원수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학과와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9.1., 2023.12.15.>

1. 삭 제 <2022.9.1.>
2. 삭 제 <2022.9.1.>

⑦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학년도에 학과별 입학정원을 원상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학과별 입학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2.9.1.>

제9조 삭 제 <2022.9.1.>

제4장 보칙

제10조(개정) 이 세칙의 개정은 본교 홈페이지 또는 그룹웨어를 통해 대학 구성원에게 1주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,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·시행한다. <개정 2022.9.1.>

제11조(준용)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2.9.1.>

부 칙

이 지침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9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개정규정 제3조는 2022학년도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하며, 2021학년도에 대하여는 2023학년도 학사단위구조개편을 위해 2022학년도에 산정한 평가결과를 그대로 적용한다.

부 칙<2023.12.15.>

이 세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